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03

발의연월일: 2022. 10. 31.

발 의 자: 조은희·김상훈·김희곤

노용호 • 박정하 • 배현진

서정숙 · 양금희 · 유경준

윤영석 • 이만희 • 이명수

이태규 • 전주혜 • 최연숙

하태경 • 황보승희 의원

(17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이와 유사한취지에서 해당 규정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이 헌법에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8헌바357, 2021헌가7).

참고로,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의 국가들에서는 선거운동의

주체와 방법에 대한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적 모임에 대하여 제재하고 있지 않음.

이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계모임·동호회 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 록 하여 이러한 사적 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 는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제3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3항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를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계모임·동호회나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집회"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第103條(各種集會 등의 제한) ①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	3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u>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u>	<u>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u>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회·야유회·계모임·동호회나 그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중
	<u>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u>
	<u>는 집회</u>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